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Some Arguments on the Copyrights in Digital Library :
Focusing on Proposed Copyright Act

김윤명(Yun-Myung Kim)*, 정준민(Jun-Min Jeong)**

초 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도서관은 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디지털환경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위한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비영리적 기관으로서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자유로운 정보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환경에서는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 쉽기 때문에 권리와 이용자의 균형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자 개정된 저작권법은 취지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도서관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아울러 디지털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As Information Technology has developed, digital library h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paradigm of role of library to adjust in digital environment. Digital library has promote information services with digitization of materials. In library fare use is allowed to the public for information services. However, digital copy and transmission is simple in digital environment, to balance between owner and user is not easy but important things. Therefore, current copyright act is revised to adjust these environment but the act restrict the users' accessing digital library through internet, not complied with the motive of revision. Moreover, proposed act which is proposed to facilitate digital library services also extremely limits information services. In this monograph, I will review the copyright act related library and seek for the improved means.

키워드: 저작권법, 디지털도서관, 법정허락, 공공대출권, 디지털화, 정보서비스, Copyright Act
digital library, compulsory license, public lending, digitization, information services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cyberlaw@chollian.net)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wizard@schoolpia.net)

■ 논문 접수일 : 2002년 5월 20일

■ 게재 확정일 : 2002년 6월 19일

1 서 론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중 하나인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는 일정한 경우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되어진 도서관에서의 저작권이용을 위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의 도서관을 말한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터넷 자체가 정보원이 되어가고 있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도서관이 디지털화 된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는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

도서관의 역할이나 이념은 도서관의 이용을 통한 지식, 정보의 활용을 통한 문화 창달에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도서관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상호대차시스템(inter-library loan system)을 이용하여 다른 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사하여 제공받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형태는 도서관이라는 기관의 강한 공익적 역할의 수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은 실질적으로 제외되었던 것이다. 즉, 하나의 치외법권이 도서관에서는 형성되었던 것이다. 적어도 아날로그형태의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서는 그랬다. 그렇지만 정보환경이 디지털화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게 되었다.

기존에 도서관에서 저작권이 문제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출판사들도 도서관이 거대 고객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문제를 삼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도 협회나 조직체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정보 사회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용자와 권리자의 대립이라는 점이다. 어느 일방에게만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저작자는 저작권, 이용자는 이용권), 권리의 균형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균형관계는 수많은 시간동안 경험적으로 형성된 묵시적 타협이었고 이를 법에서 수용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타협을 할 시간적 여력이 없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뒤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처음 인쇄술의 발명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개연성이 다분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이를 기화로 그 형성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라디오, 방송, 영화, 음반 등의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저작권법은 그 범위를 확산시켜나가고 있고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디지털환경에 적응

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과 더불어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는 이미 1996년 12월에 WIPO저작권조약(WCT)와 WIPO실연·음반조약(WPPT)을 제정하였고, 2002년 3월 및 5월에 각각 발효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현재 가입을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하, 현행 저작권법 및 개정저작권법 안에서 문제가 되는 도서관관련 조항을 고찰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2.1 정보환경의 변화와 디지털화권

2.1.1 정보환경의 디지털화

아날로그시대에서 인터넷 등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생활은 물론 국가형태가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다. 디지털화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의 물리적인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고, 무한정의 복제 및 제공, 공간적인 제약의 극복을 통한 시간적 제약의 극복 등 많은 장점을 인류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즉, 정보의 불법복제, 해킹,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기존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실제사회의 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서관의 디지털화가 그 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도서관이 디지털 환경에 적용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정보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은 기존의 도서관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표출시켰다. 정보유통의 최전방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이 저작권이라는 권리관계에 대한 커다란 걸림돌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1.2 정보의 디지털화와 디지털화권

(1) 디지털화의 의의 및 특징

디지털화란 0과 1의 연산체계, 즉 비트로 정보를 부호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란 글자나 그림의 실제의 모습을 수많은 부분들로 분해하여 각 부분에 수적인 값을 할당하는 과정을 말한다(백옥인역, 1995). 결국, 정보의 디지털화란 기존의 정보자료가 컴퓨터로 처리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또한 그러한 결과를 말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정보환경의 변화와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정보자체의 디지털화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0과 1의 정보단위 형

태로 가공된 디지털 정보는 그 유통이나 축적 등이 자유롭고 이용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이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서 오는 많은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일종의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는 그 구성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정보의 디지털화는 그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화를 통하여 각국은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인쇄형태의 자료를 스캐닝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보의 디지털화를 디지털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화는 통신기술의 진보와 어우러져 무제한의 정보유통이 가능해지는 소위 정보혁명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정진섭, 황희철 1995).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하였지만, 디지털화 된 자료는 원본과 복사본의 차별 없이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인쇄매체 복제 시 그 질적인 차이로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가능하였지만, 디지털 정보에 있어서는 구별의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용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송영식, 이상정 1997). 그런 의미에서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한국전산원 1997)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다분히 공정한 이용에

관계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악의에 의한 정보의 유통은 디지털화가 지는 정보의 다양한 이용의 기회제공과 합치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며, 정보사회의 궁극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복지화에 대한 역행이라고 할 것이다.

(2) 디지털화권과 저작권

저작권재산권은 물권유사의 배타적 지배권이라고는 하나 물권의 경우와는 달리 저작자 자신이 이 권능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의 경우에는 타인, 특히 전문적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권리로서 타인의 무단이용을 금지시킴으로써 권리의 효용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다른 지적소유권과 공통적이다.

기존의 아날로그정보의 디지털화는 디지털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디지털화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디지털화는 저작권의 또 다른 권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다. 즉, "디지털화권"이라는 용어는 i)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를 허락할 수 있는 (복제권의 한 형태로서의) 권리와 ii)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자가 당해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신재호 2002).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 법<동 법은 아날로그 형태의 테

이거나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디지털화하는 사업자를 다른 동종업자의 부정경쟁행위로부터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 입안과정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자에게는 저작권재산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디지털화권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법률에서는 삭제된 바 있다.

2.1.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논의

(1) 디지털 도서관의 이해

본고에서는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피하기로 한다. 이에선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을 비롯하여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책이 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 논리상의 도서관(Logical Library), 네트워크 도서관(Networked Library), 벽 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Walls), 인터넷 도서관(Internet Library) 등 유사한 개념의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하나 디지털도서관으로 통일되어 논의되어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본고에서는 용어 정리를 위해 전자도서관을 포함한 관련 개념 일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디지털도서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되 간단히 “정보 및 자료가 전자화 내지는 디지털화된 도서관”의 개념으로 이해토록 하겠다.

(2)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

디지털화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만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과 디지털 서비스 제공 시 그에 따른 저작권 법적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즉, 좀 더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기를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의 수집, 보관, 열람이나 복사 등의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결국 도서관은 디지털화·네트워크화를 위해 대규모의 정보 DB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 보존하고 각종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종문 2001). 이는 곧 기존 아날로그 저작물 등의 디지털화 및 컴퓨터 등이나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전송 서비스 과정에서 저작권자와의 복제, 전송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더불어 공정한 이용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도서관의 전자화, 디지털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많은 도서관 또는 기업 등이 이를 계획 중이거나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1.4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당해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첫째, 저작권은 있지만 그 특성상 저작권을 유보한 경우로서 법률이나 판결, 의회 등에서의 연설과 같은 경우이다. 둘째, 보호기간의 만료를 통해서 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및 사후 50년 동안만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재산권의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 규정으로서 본 고에서 다루고 있는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사적복제, 시사보도에서의 이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보호받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3 현행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규정의 검토

3.1 현행법의 주요 내용

3.1.1 의의

현행 저작권법은 1999년 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개정의 주된 내용은 전송권의 신설, 디지털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한 규정들이다. 디지털화 관련 기존의 많은 문제점들을 동법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전송권(저작권법 제2조 9의 2호)을 신설함으로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유통되어질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동법에서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전송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도서관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2 주요 내용

현행법은 디지털환경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개정 내용 중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송영식, 이상정 2000).

첫째, 컴퓨터통신 등이 급속하게 발전됨에 따라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함으로써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전송으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가 빈번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 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자도서관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 등의 저작물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당해 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2 도서관 관련 규정

3.2.1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4.3.24, 2000.1.12>.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3.2.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법 제28조제2항 후단(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
 - 가. 당해 시설과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컴퓨터 등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현시외의 방법으로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 나.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 다. 컴퓨터 등의 화면상의 자료현시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3.3 관련 내용 검토

3.3.1. 제1항의 요건

- 저작물의 복제 등의 가능요건

제1항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주체적 요건

(가) 도서관 등이 복제의 주체일 것

우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범위

한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

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도서관(이하 “국립도서관등”이라 한다.)에 한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이와 같이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을 국립도서관 및 국가 지원 하에 구축 중인 디지털도서관 시행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디지털도서관 구축의 원활한 지원과 이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과다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화 면책으로 인해 자칫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제가능 시설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을 정한 것에 그치므로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나 계약 등을 통해 도서관, 가정, 직장 등에서 얼마든지 도서관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신창환 2000).

(2) 객체적 요건

(가)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일 것 (오승중, 이해완 2000)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만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며 자료의 소유권이 당해 도서관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일시 빌려온 것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황적인 교수는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황적인 2000). 그러나 이용자가 스스로 외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용득 1998).

(나) 복제의 방법

복제방법은 복사에 한하지 아니하며 사진·촬영·마이크로필름에의 수록·녹음·녹화 등 자료의 종류에 따라 복제에 친숙한 방법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불문한다(최성우 1999). 그러나 컴퓨터 등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주체가 제한된다.

(3) 유형별 요건

(가) 이용자의 요구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로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허희성, 2000).

첫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복제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오락이나 감상을 위한 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제이어야 한다. 따라서 미리 수요를 예측하여 복제해 놓고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셋째, 공표된 도서 등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저명작가의 유고나 일기 등 미 공표 저작물은 제외된다. 그러나 미 공표 저작물이라도 도서관등의 입수경위에 비추어 저작권자가 이를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

넷째, 도서 등의 일부에 한해서 복제 가능하다. 종래에는 “저작물”의 일부분이라 하여 그림 등의 미술저작물이나 사진 저작물 같이 저작물로서 불가분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악보나 지도의 경우도 일부분만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다(허희성, 2000).

마지막으로, 복제의 수량은 1인 1부에 한하며 단체나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다수의 복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이는 허락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지만 1인 1부로의 제한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복제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복사점의 복사기를 통하여 원하는 만큼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분만을 복제 허용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달리하거나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복제하게 된다면 이러한 제한 규정도 별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집중관리 등 디지털환경에 맞는 저작권관리시스템의 운영이 이러한 제한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나) 자체보존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원 자료의 폐기를 전제로 소장공간의 협소에 따른 마이크로필름 화나 소장 자료의 손상이나 분실을 보완 또는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 이의 복제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결호를 보충하거나 열람용으로 추가 복제하거나 재정상의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

이 규정은 도서관 등의 시설 상호간에 보존용으로 저작물의 복제물 제공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한 것으로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다른 “도서관 등”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복제의 주체는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등이라 할 것이며 다른 도서관등이 이를 직접 복제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둘째,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 경제적인 이유나 시간적인 이유, 장소적인 이유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미 일반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아 구입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3.3.2 제2항의 요건

-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1) 의의 및 문제점

제2항에서는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0년 개정법에서 신설된 사항이다.

제2항이 일종의 디지털 복제·전송을 허용한 규정이라면 제1항은 주로 아날로그 복제를 그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동조 2항을 가지고 도서관은 모든 자료에 대해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김상배 외 2001). 왜냐하면, 동법 제28조 1항은 복제하여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형의 원 저작물을 멸실시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항은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을 담은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시행령 제3조에서 복제가능 한 도서관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관의 반발이 있다고 본다.

(2)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조치의 유형

제2항에서는 또한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위하

여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불법이용방지 조치, 권리침해 예방교육, 경고표지 부착을 말하며 동 시행령 각 호와 각목의 관계는 중첩적인 것으로, 디지털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법 제28조 제2항에서 허용된 복제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을 모두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재 규정의 미비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허희성 2000). 각각의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창환 2000).

(가)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당해 조치는 복제방지 장치, 암호화 조치, 이용·변경 확인조치, 전자기록매체 이용방지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컴퓨터 등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내게 하는 자료현시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로서, 이 경우는 저작물에의 접근은 통제하지 않지만, 이용방법 중에서 자료현시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전송하는 것은 금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둘째,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외의 자가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로서, 저작물이 당해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저작물을 특정한 형태로 변환한 뒤 이를 다시 읽을 수 있는 형태

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으로, 도서등을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컴퓨터 등의 화면상의 자료현시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이다.

넷째,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로서, 이미 CD-ROM 등 전자기록매체의 형태로 유통되는 판매용 저작물은 저작자 및 매체 제작자의 상당한 투자분을 고려하여 도서관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이다.

(나)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당해 도서관의 사서직원 및 행정직원에게 대한 교육을 당해 도서관장을 하여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에 대한 교육인지 또는 직원에 의한 이용자 교육인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있지 않다. 그렇지만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다)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실질적으로 열람을 하게 되는 컴퓨터의 외관에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에 대한 경고표시를 부착하여 이용자에 대한 계도행

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4 소 결

적어도 동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도 아무런 제한 없이 행하여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저작권자 등의 요구와 반대로 인하여 시행령에서 본 법에서 인정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기존의 아날로그형태에 이용관계에 어울리는 법제이다. 따라서 디지털환경에 맞는 법제로 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가능한 도서관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도서관의 공익적 역할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해소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4 개정저작권법(안)에서의 도서관 관련 규정의 검토

4.1 개정저작권법(안)의 주요 내용

4.1.1 의의

개정저작권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편집물 제작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여 그 투자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저작권자 등이 불법

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실질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와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4.1.2 주요 내용

첫째,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편집물을 보호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편집물 제작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제작자에 대하여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편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편집물제작자의 권리는 편집물을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간 보호하도록 하고, 편집물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종전에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도 도서 등의 도서관간 복제·전송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서 등의 당해 도서관등의 관내 열람 목적으로 소장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만 허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도서관등에서의 저작권 제한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넷째,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제조 등의 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섯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가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알고 복제 또는 전송을 지체 없이 중단시킨 경우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경 또는 면제요건을 정하고, 저작권자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권리주장 절차와 책임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4.2 관련 규정

-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제외한다)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전송을 함에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개정안에 대한 논의

4.3.1 개정안에 대한 비판

개정안이 2001년 입법예고 되었을 때, 개정이유에 대해 “도서관이용자가 컴퓨터 등을 통해 소장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 초래 및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현행 저작권법 시행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전혀 동떨어진 사항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개정이유가 진정한 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것이겠지만 출판사 등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문화부의 입안자들도 나름대로의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존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권리와 이용자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4.3.2 주요 내용 검토

(1) 제1항 - 디지털 복제·전송의 제한

현행법에서는 조사, 연구 목적이거나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도서 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라도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 제2항 - 물리적, 시간적 제한

(가)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복제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의 “다른 도서관 등에서”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용 장소를 해당 도서관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적어도 법조문의 해석상으로는 온라인 상으로 접근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원천적으로 외부의 접근이 차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시행령에서 외부에서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러한 이념적인 허용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디지털도서관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하겠다.

(나) 이용자 등의 제한

특히 정보보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관내 열람한정과 관내 열람의 경우에도 당해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이는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더라도, 디지털도서관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규정이라고 하겠다(이상정 외 2002a).

먼저, 동시 이용자 수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보면, 개정안에서는 어느 특정된 도서 등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구비해놓은 도서 등의 수와 동일한 접근만을 허용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이 이미 해당 도서 등을 열람하고 있다면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열람이 기술적으로 금지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디지털화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이며, 이는 디지털경제에도 심각히 역행하는 조치로 보여 진다.

또한 이용자 수의 제한 이외에 동시 이용 복제물 수의 제한함으로써, 복제물의 수도 아날로그형태의 도서 등의 숫자와 맞게 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인 복제는 하나만 이루어지겠지만, 기술적으로 해당 도서 등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점을 해당 도서의 수만큼 차단하여야하는 점이다. 이 또한 디지털화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조치라고 하겠다.

(3) 제3항 - 디지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전송의 금지

제3항에서는 본래적으로 디지털화 된 상태의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나 전송을 금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아날로그 형태의 도서 등을 디지털화하는 경우이며, 본 항은 원래부터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나 전송을 금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본 조항은 동법 내에서도 충돌할 수 있으며, 도서관이라는 이용자의 이용권도 제한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의 비교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4조 1항에서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정당한 권리자라면 복제본을 제작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이용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나) 제2항과의 충돌 문제

설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4조의 규정과 같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항 2호를 유추하여 자체보존을 위한 복제가 가능하다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개정안은 다시 원래부터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는 상충한다고 본다.

(4) 필요조치의 강구

제4항에서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헌의 소지에 대한 문제

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허희성, 2000)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조치를 통한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이용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도서관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할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도 고려하여야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예산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문화예술시민연대 외, 2002).

4.4 소 결

개정안 중 특히 문제되는 것은 관내 열람한정과 관내열람의 경우에도 당해 도서관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토록 한 점이다. 이 점은 저작권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디지털도서관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규정이다. 어차피 당해 도서관내의 단말기에 의한 제한이 있다면 소장도서의 부수에 의한 제한은 지나치다고 본다. 이것은 결국 디지털도서관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같다(이상정 2001).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디지털화가 가능한 도서관을 제한하고있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도서관이 공공복리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개정안은 상당한 문제점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누구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하겠다. 결국, 개정안은 여러모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을 늦추더라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디지털도서관 구축시 고려사항 및 개선 방안

현행 저작권법은 그 태생이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이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환경에서의 적용은 쉽지 않다고 본다. 즉, 현행 법률의 내용으로 디지털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합의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법률의 규정이 아닌 제도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디지털도서관의 이용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1 디지털도서관 구축 시 고려사항

5.1.1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추진

현행법은 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디지털화 된 결과물의 활용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도서관이 관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인터넷의 이용자가 해당 도서관의 사용자라는

인증이 되면, 이는 관내의 사용과 같은 의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IP 범위가 인증된다면 해당법의 테두리에 있다고 볼 것이다.

5.1.2 개별적인 허락(계약)을 통한 디지털화 및 서비스 제공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의 계약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5.1.3 우선 가능한 사항부터 서비스 추진

도서관의 디지털화는 우선 해당 대학이나 도서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술조치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순차적인 디지털화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5.1.4 기타 사항

초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록과 요약으로 구분되지만, 전자는 저작권은 적용하지 않고 후자에는 저작권이 적용된다고 본다(황적인 2000). 다만, 초록의 경우에는 원문의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제시해 주는 지시적 초록의 형식에만 저작

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윤선영 2001). 그리고, FAX 등을 통한 서비스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FAX를 통한 원격지 서비스는 현행법상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초록과 마찬가지로 도서 등에 대한 사실정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송이나 복제는 허용된다고 하겠다.

5.2 개선 방안

5.2.1 공공대출권의 도입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이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행해지는, 직접적인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용을 위한 제공"을 의미한다(송영식, 이상정 2000). 따라서 공공대출권(이하 "공대권", public lending right)이란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이 도서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그 수량만큼 저작자가 판매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입법례로써 특별법 형식을 도입한 나라로는 덴마크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이나 공공도서관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공대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이 있으며 사용대차의 형식

을 빌어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대권은 저작물의 대출로 인해 저작자의 잠재적 시장이 줄어들어 저작권만으로는 저작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인정되고 있다. 공대권의 인정은 저작물 이용자인 일반 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도서관도 성가신 행정적 요건으로부터 간섭받지 말아야 하며, 최초판매 이론에 따른 배포권의 제한 이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최성우 1999).

다만 공대권의 문제는 베스트셀러작가에게 또 다른 이익이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져온다. 즉,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자료에 대한 누적률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베스트셀러는 시중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겠지만, 도서관에서도 주로 찾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대권의 원 취지가 상실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디지털환경에서의 공대권의 도입이 필요하며, 다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등 디지털환경에 맞는 기술적 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권의 도입이전에 도서관의 제반 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2.2 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

현행 저작권 체계 하에서 대량의 디지털화 대상 자료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저작권위탁관리단

체와의 일괄계약 등을 통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운영모델은 첫째, 시장 원리에 따르는 방안, 둘째, 저작권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셋째, 저작물 집중관리 및 강제이용허락제도 도입이 있을 수 있다(정찬모 1998).

이와 관련하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창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것은 공중 복사기에 의한 복사가 사적이용에서 벗어남에 따라 그 권리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관련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의 복사권 센터를 모범으로 한 것인데 일본 복사권 센터와 달리 전송권까지 권리처리를 하겠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권리자의 자발적인 임의단체인데 이 단체의 성패는 어느 정도의 저작물을 확보하여 권리처리를 하고 권리처리 없이 전송 복사하는 자를 단속하며, 복사 등을 허락하고 받은 보상금을 얼마나 공정하게 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송영식, 이상정 2000).

5.2.3 법정허락제도의 보완

사이버세계에서의 저작물이용은 궁극적으로 개별허락을 통해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나의 저작물이 나올 당초에는 기술조치 등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저작권은 저작자사후 50년까지 존재하는 권리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계속 새로운 기술조치를 부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집단적 권리처리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사이버세계에 등재하여 그러한 저작물은 대가만 지급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통신망 사용료나 매체의 대가 지급을 대가지급으로 의제한다). 결국 법정허락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이상정 외 2002b).

법정허락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법정허락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한 요금을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급 또는 공탁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으로부터 직접 사용권이 부여된다(송영식, 이상정 2000).

디지털도서관은 비영리적이고 공익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다수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포괄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공익을 위하여 디지털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법정허락제도의 도입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겠다(이경운 1998).

6 결론 및 제언

결론부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보다는 앞으로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으로서 마감하고자 한다. 도서관은 정보서비스, 문화 창달 등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디지털환경에서는 그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고전적인 패러다임에서 디지털화 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정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환경을 도입하고 또한 적극적인 요구를 통한 역할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현재의 위치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6.1 결론

저작권법은 이제 문화적인 성격에서 산업적인 성격으로 그 모습을 변모해 가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문화산업이라는 표현이 이제 새로운 산업의 형태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이제는 아날로그 형태를 지양한 정책에서 디지털환경에 맞는 법의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혹자는 개정안에서의 디지털콘텐츠의 보호,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규정이 삽입된 것을 보고, 저작권법체계가 창작성에 바탕을 둔 법체계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이 그 창작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호해야 할 가치체계가 있다면 보호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저작권법의 유통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의 도입은 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도 정보이용에 대한 지불주체를 도서관 이용자로 할지, 아니면 도서관 운영자로 할 지에 대한 선택에 달려있지,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은 앞으로서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도서관이 기존의 아날로그형태의 물리적 공간을 디지털형태로 전환하면서, 디지털형태의 사고를 도입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본다. 도서관의 역할을 20세기에 고정하지 말고, 도서관도 일종의 사업주체로 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저작권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업적 성격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행 저작권법이나 개정안은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너무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의 활용이나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보 복지화'라는 국가정보화의 대 이념과도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6.2 제 언

그리고, 현재 도서관관련 규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련 단체들은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관련된 내용이 규제로서 작용하게 된다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서관에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도서관인에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상배 외. 2001. 『지식정보유통의 촉진 및 권리보호 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니콜라스 네크로폰데, 백옥인 역. 1995. 『디지털이다』. 박영출판사.
- 맹성현. 1998. 디지털 도서관의 구성요소. 『제1회 디지털 도서관 컨퍼런스』.
- 송영식 · 이상정. 1997. 『저작권법개설』. 화산문화.
- 송영식 · 이상정. 2000. 『저작권법개설(전정판)』. 세창출판사.
- 신재호. 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 전법에 대한 소고. 『한국산업재산권』, (11).
- 신창환. 2000. 『개정 저작권법령 해설, 개정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자료』.
- 오승중·이해완. 2000. 『저작권법』. 박영사.
- 윤선영. 2001.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267): 19-33.
- 이경윤. 1998.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相珥. 2001. 著作權法 改正案에 대한 管見(하). 『창작과권리』, (23): 50-66.
- 이상정 외. 2002.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의 국가전략적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상정 외. 2002. 『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이종문. 2001. 디지털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도서관』, (22): 135-142.
- 정진섭·황희철. 1995.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 정찬모. 1998.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책』, 10(23).
- 최성우. 1999. 『저작권법(제2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하용득. 1998. 『저작권법』. 법령편찬보급회.
- 한국전산원. 1997.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동원.
- 허희성. 2000. 『2000저작권법축조해설』. 저작권아카데미.
- 황적인. 2000. 『도서관과 저작권, 도서관에서 저작권대책 워크숍』.